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66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의자 : 김영진 · 박지원 · 허영
박홍배 · 안태준 · 송재봉
강준현 · 임호선 · 김우영
서삼석 · 이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반 확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뜻하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하여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스마트공장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관련자산”이라 한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공장관련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공장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스마트공장관련자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28조의5(스마트공장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u></p> <p><u>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관련 자산”이라 한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공장관련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u></p>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